

의안번호	2219821
의 퇴 인	박정현의원
회 답 일	2026.9.18.
추계번호	26D3369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5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)	인수위원회 위원수를 시·도는 현행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, 시·군·구는 현행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5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인수위원회 규모 확대 관련(안 제105조)

- 현행 「지방자치법」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「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위원수, 회의 운영, 위원회의 직원, 수당, 활동 결과보고 등을 정하고 있음

<참고: 「서울특별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>

제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5조제5항에 따라 20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고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직원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, 자문위원, 직원,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,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위원수가 늘어나는 경우,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인수위원회 위원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, 이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·여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실비변상의 성격인 여비를 제외하고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회의참석 시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에 한정하더라도,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급 인원과 지급횟수 등을 전제하여야 하나,
- 지방자치단체별로 분과위원회 설치 여부와 설치 규모가 서로 다르고,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, 이에 대한 일률적인 가정을 통해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